

경 영 공 시

본 농협은 신용협동조합법 제83조의2,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및 상호금융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합니다.

아 래

1. 공시사유 : 농업협동조합법 제145조제2호에 의한 조합감사위원회의 임직원에 대한 징계 및 문책 요구(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제3항제5호)

2. 공시내용

- 대 상 : 기능주임 김○○ 등 1명
- 경 위 : 근무시간 중 불법 도박행위를 하여 발생
- 주요내용 : 기능주임 김○○ 감봉 3월, 업무주임 임○○ 감봉 1월
- 수지에 미치는 영향 : 손실금 없음

2017년 7월 11일

예천농업협동조합장

